재난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안 (오영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515

발의연월일: 2023. 6. 7.

발 의 자:오영환·강은미·유기홍

우원식 · 김교흥 · 민병덕

이성만 • 조오섭 • 박주민

임호선 · 양기대 · 송갑석

윤준병 • 이학영 • 장철민

최기상 • 맹성규 • 허 영

홍정민 · 이개호 · 김승원

강준현 · 이수진 의원

(2391)

제안이유

현재 재난에 관한 조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의 원인과 대응 과정에 관한 조사·분석·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있음.

그러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현행 재난조사 체계로는 다수인명 피해를 동반한 재난과 기후 위기 및 재난환경 변화로 인하여 대형 화·복합화되고 예측이 어려운 현대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재난사고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에 대해서는 재난사고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갈수록 예측이 어렵고 대형 화되고 있는 현대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국가재난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재난 등에 대한 독립 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재난 등의 예방과 국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 조).
- 나. "재난사고 조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이하 "재난등"이라 한다)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분석 ·평가를 말함(안 제2조).
- 다. 재난등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재난사고 조사를 독립적이고 공 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재난사고조사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함(안 제3조).
- 라. 위원회는 재난등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재난사고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마. 위원회는 재난사고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 또는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재난등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한 자 및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재난등 관련 보고 또는 자료의 제

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바. 위원회는 재난사고 조사과정 중 또는 재난사고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재난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재난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 사고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재난 등의 예방과 국민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 2. "재난사고조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이하 "재난등"이라 한다)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분석·평가를 말한다.
-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외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가재난사고조사위원회

제3조(국가재난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재난사고조사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재난사고조사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무총리는 일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지휘·감독하되, 국무총리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사고 조사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한다.

제4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재난사고조사
- 2. 제22조에 따른 재난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
- 3. 제23조에 따른 재발방지조치의 권고 등
- 4. 제26조에 따른 정보관리 체제 구축 · 운영 등
- 5. 그 밖에 재난사고조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 ②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안전분야 또는 긴급구조 관련 분야에 5 년 이상 종사한 사람
 - 2.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재난·소방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3.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상임위원,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지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5. 재난등의 예방 및 수습활동 등과 관련된 장비를 제조·개조·정비 또는 판매하는 자 및 그 밖에 재난등과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는 자 또는 그 임직원
- 제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재난 사고와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위원은 해당 재난 사고와 관련한 직무의 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은 임기 중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이 법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 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 제11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재난사고 조사 내용을 효율적으로 심

- 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자문위원) 위원회는 재난사고 조사에 관련된 자문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있다.
- 제14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재난사고 조사관 그 밖의 직원으로 구성한 다.
 -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 업무를 처리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재난사고 조사

- 제15조(재난의 발생 통보)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재난 상황을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제16조(재난사고 조사의 개시 등) ① 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재난등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재난사고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난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의 대상인 경우에는 재난사고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 1.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사고 조사
 - 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양사고의 조사
 - 3.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 4. 「건축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사고조사
 -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6조에 따른 사고조사
 - 6.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사고조사
 - 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에 따른 사고조사
 - 8.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른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 9.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화재조사
 - 1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사고조사

-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조사
- 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사고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조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 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 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재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 2. 제1호에 따른 재난에 준하는 재난으로서 위원회가 체계적인 재난 사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 제17조(재난사고 조사를 위한 조치 등) ① 위원회는 재난사고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 또는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를 요청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 재난등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한 자 및 그 밖의 관계인(이하 "재 난 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한 재난등 관련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 2. 재난등 현장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해당 재난등과 관련이 있는 장부·서류 또는 물건(이하 "관계물 건"이라 한다)의 검사
 - 3. 재난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질문
 - 4. 관계물건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해당 물건의 보

- 존ㆍ제출 요구 또는 제출한 물건의 유치
- 5. 재난등 현장 및 그 밖에 관련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보존의 요구를 받은 자는 해당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거나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유치한 관계물건이 재난사고 조사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한다.
- ⑤ 그 밖에 재난사고 조사를 위한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재난사고 조사단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재난사고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야별 관계 전문가와 해당 재난현장 생존자 및 유가족을 포함한 재난사고 조사단을 구성·운 영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사고 조사단의 구성·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재난사고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국가기관등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재난사고 조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수 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20조(의학적 검사 등) ① 위원회는 재난사고 조사와 관련하여 사상 자에 대한 검시, 생존자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재난등과 관련된 시설이나 제품 등에 대한 검사·분석·시험 등을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시·검사·분석·시험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등에의뢰할 수 있다.
- 제21조(재난 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재난사고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해당 재난 관계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재난사고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재난 관계인(해당 재난현장 생존자 및 유가족등을 말한다)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22조(재난사고 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① 위원회는 재난사고 조사를 종결한 후 3개월 이내에 원인분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재난사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총리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재난사고 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23조(재발방지조치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활동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재난사고 조사과 정 중 또는 재난사고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난 등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권고할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4조(재난사고 조사의 재개) 위원회는 재난사고 조사가 종결된 이후에 재난사고 조사 결과가 변경될 만한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난사고 조사를 다시 할 수있다.

- 제25조(정보의 공개금지) ① 위원회는 재난사고 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해당 또는 장래의 재난사고 조사에 영향을 줄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재난등과 관계된 사람의 이름이나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정보관리 체제 구축·운영 등) ① 위원회는 국내외 재난등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분석·전파 및 공유하기 위하여 정보관리 체 제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재난사고 조사 기법의 개발 및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조사 및 연구활동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관리 체제의 구축·운영 및 조사·연구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 칙

- 제27조(비밀누설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위원회의 위원·자문위원 또는 사무국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 2.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수 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 제28조(불이익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진술·증언·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한 사람은 이를 이유로 해고·전보·징계·부당 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제29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 제21조 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 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 칙

- 제30조(재난사고 조사방해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재난등에 관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 2. 제17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재난등 현장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출입 또는 관계물건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 3. 제1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관계물건의 보존 및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 4.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물건을 긴급한 사유 없이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이동·변경 또는 훼손시킨 자
- 제31조(비밀누설의 죄) 제2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3조(과태료) ① 제28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한 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재난등과 관련이 있는 자료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자
 - 2. 제1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

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7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관계물건의 검사를 기피한 자
- 2. 제1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관계물건의 제출 및 유치를 기피한 자
- 3. 제1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출입통제에 따르지 아니한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2년 10월 29일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재난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되, 이 법시행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에 따라 재난사고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이 법에 따른 재난사고조사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9제1 항제6호·제7호, 제69조 및 제70조제1항제2호·제3호를 삭제한다.

- 제4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사무국 직원의 위촉 또는 임명,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특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 으로 본다.